

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창원의원 (찬성자 40명)
- 의안번호 : 제183호
- 제출일자 : 2018년 10월 17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29일

2. 제 안 이 유

- 스마트폰과 전자기기의 대중화로 시민들이 보행 중에도 각종 전자기기를 이용하면서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 사고로 이어지면서 안전 대책 마련 및 시민 제도 활동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.
- 특히, 국내 최초의 고가 보행자 전용도로인 '서울로 7017'의 경우 각종 시설물들이 산재하여 보행이 불편한 구조로 서울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행위 제한 사항에 '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'를 포함하고, 행위를 제한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보행 중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행위를 제한함
(안 제13조제1항제6호 신설)
- 나. 제한하는 행위를 표시한 안내표지판 설치의 의무화
(안 제13조제3항 신설)

4. 검 토 의 견 (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개정안은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이용으로 보행자와 보행자간의 충돌 및 각종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안전대책과 시민 제도 활동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바,
- 국내 최초의 보행자 전용도로인 서울로 7017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다른 사람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이용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.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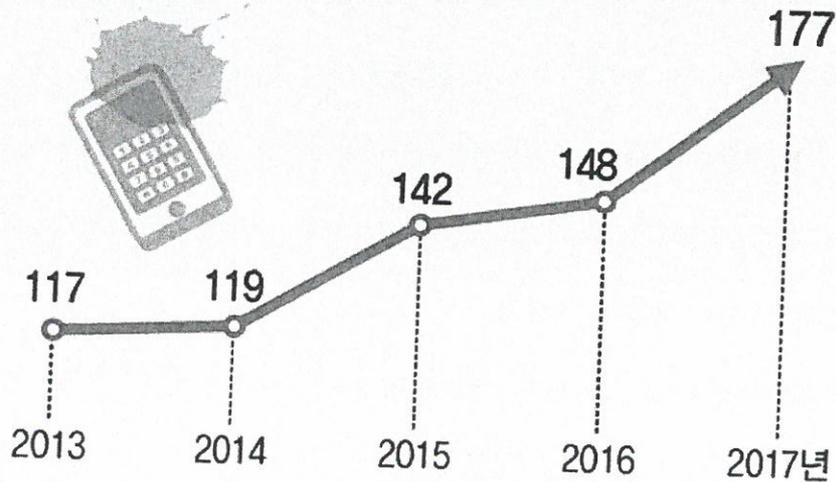
1)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 및 동향

-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거나 화면을 보며 걸어다니는 사람을 ‘스몐비’¹⁾라고 부를 정도로 신조어가 생겼으며, 스몐비가 되면 집중력 저하, 주의 산만 등 정신적 문제부터 시력저하, 근골격계 이상,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. 그러나 무엇보다

1) 스몐비(Smombie) = 스마트폰(Smart phone) + 좀비(Zombie)

가장 큰 문제는 인명사고 발생임.

-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보행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차량 사고를 당한 사례는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77건으로 5년사이 51.3%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현대해상의 시장점유율이 20%인 것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사용 사고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.



자료: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

(스마트폰 사용하던 보행자 교통사고)

- 우리나라에서도 「도로교통법」에 횡단보도 보행시 휴대전화 또는 영상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²⁾되는 등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준비중이며,
-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

2) 「도로교통법」 일부개정 법률안(신창현의원 등 10인)

- 제안일 : ' 17.6.12 - 상정일 : ' 17.11.23 - 상정 결과 : 소위원회 회부

- 주요내용 : 보행자가 횡단보도 횡단 시 휴대폰, 영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 개정을 통해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음³⁾).

2) 서울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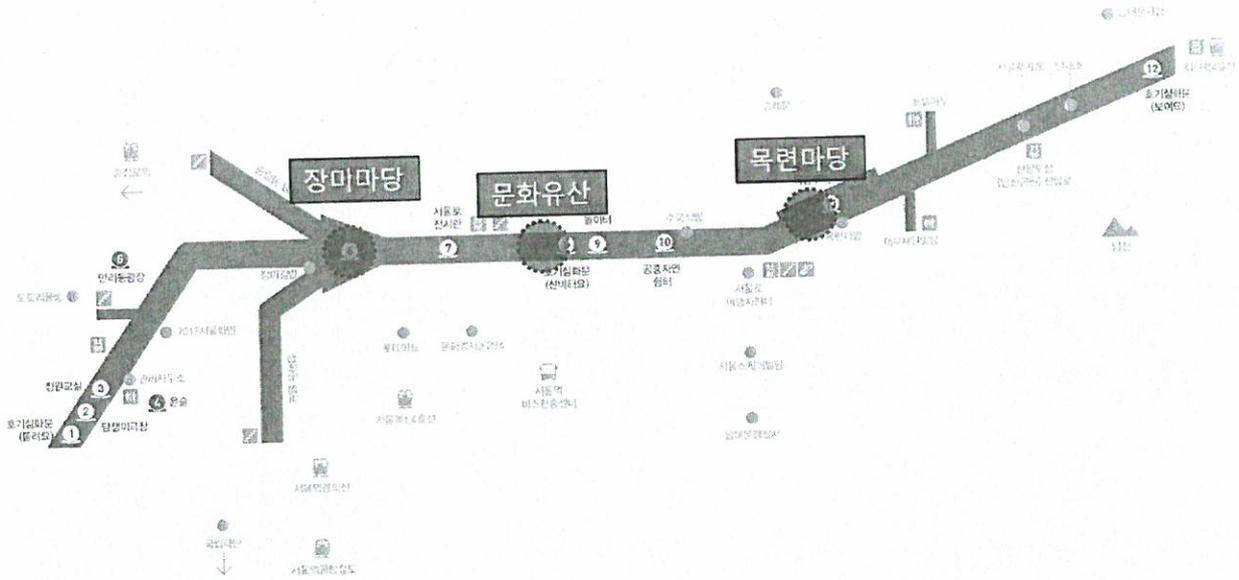
-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은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로, 서울역 고가 구간은 '보행자전용도로', 퇴계로는 '대로', 만리동광장은 '광장'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전체 구간은 「도로법」의 적용을 받는 지역임.
- 서울로 7017은 교통시설로 분류되었으나, 보행자전용도로에 다수의 식물을 식재하였으며, 카페, 관광안내소, 기념품가게가 있는 등 기존 도로의 형태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음.
-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「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관리운영의 기준을 삼고 있음.
- 현재 서울로 7017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시설이며, 방문객들은 전망을 조망하고, 도심경관을 촬영하는 등 주로 관광목적으로 서울로를 이용하고 있음.
- 본 시설은 최초 공사할 때부터 퍼블릭 와이파이존 (Public Wi-Fi zone)으로 계획하였으며, 시설 운영을 위해 고가 상부와 만리동광장에 26개의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전 구간에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기반시설을 갖추었음.

3) 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 제4조(시민의 권리와 의무) ④ 모든 시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. <신설 2018.3.22.>

- 또한 서울로에 설치된 645개의 화분에는 QR코드를 부착하여 50과 287종의 식물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 기반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서울로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스마트폰 사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미마당, 세계문화유산, 목련마당 3지점의 시간별(점심, 저녁), 요일별(평일, 주말) 10분동안 통과한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현황을 조사하였음.
- 지점별로 평일 점심시간은 9.1~18.3%, 저녁시간은 27.1~33.3%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, 주말에는 점심시간 11.9~24.6%, 저녁시간 14.4~38.5%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〈서울로 7017 이용자의 스마트폰 이용현황 조사〉

구분	시간	장미마당		미래문화유산		목련마당	
		이용객수	스마트폰 사용자수	이용객수	스마트폰 사용자수	이용객수	스마트폰 사용자수
평일 11.30 (금)	12:30 ~	160	20	180	33	143	13
	12:40 ~	12.5%		18.3%		9.1%	
	19:30 ~	78	26	71	23	70	19
	19:40 ~	33.3%		32.4%		27.1%	
주말 12.01 (토)	15:30 ~	202	24	317	78	221	35
	15:40 ~	11.9%		24.6%		15.8%	
	19:30 ~	65	25	96	33	90	13
	19:40 ~	38.5%		34.4%		14.4%	



서울로 7017 이용자 스마트폰 이용현황 조사 위치도

3) 개정안에 대한 의견

- 본 개정안에 포함된 ‘보행 중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타인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’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줄이고, 이용자간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으며,
- 각 출입구에는 행위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한 조치임.
- 그러나 서울로 7017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반이 만들어진 스마트시티 공간이며,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임을 감안할 때, 스마트폰 및 전자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